

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옥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22. 7. 13

발 의 의 원 : 김정옥, 김지만, 손한국,
김재우, 전경원, 하병문,
박종필 의원(7명)

1. 제안이유

민선 8기 시정방향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와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상호 중복되는 기능(건설)을 통합하여 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조직 경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대구교통공사로 명칭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(안 제명)

- 「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→ 「대구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명칭 변경(안 제1조 및 제2조)

- 대구도시철도공사 → 대구교통공사

다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(안 제9조)

-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

라. 그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대구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대구도시철도공사”를 “대구교통공사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대구도시철도공사”를 “대구교통공사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전단 중 “하고”를 “하고,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5호 중 “임·직원”을 “임직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사장”을 “대구교통공사 사장(이하 “사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구분하고”를 “구분하고,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하며”를 “하며,”로 한다.

제7조의2제2항 중 “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6조의3에 의한다”를 “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56조의3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연임될”을 “연임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4항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4항”

을 “법 제58조제4항”으로,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선임하며”를 “선임하며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범위 내에서 이사활동”을 “범위에서 이사회 활동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7조의2에서 정하는”을 “시행령 제5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임·직원”을 “임직원”으로,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얻어”를 “받아”로 한다.

제20조제3항 중 “당해 사업연도 종료후”를 “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결산완료후”를 “결산완료 후”로, “「지방공기업법」이 정하는 바에”를 “법에”로, “얻어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전단 중 “얻어”를 “받아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얻어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전단 중 “얻어”를 “받아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얻어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얻어”를 “받아”로 한다.

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얻어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한다.

제29조 전단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33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대구교통공사의 설립을 위해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정관을 변경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대구교통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보고,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모든 재산은 대구교통공사가 승계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2항제5호나목 중 “대구도시철도공사”를 “대구교통공사”로 한다.

②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단서 중 “대구도시철도공사”를 “대구교통공사”로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대구교통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	<u>대구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<u>대구도시철도공사</u> 를 설립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대구교통공사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법인격) <u>대구도시철도공사</u> 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한다.	제2조(법인격) <u>대구교통공사</u> ----- ----- -----.
제4조(자본금)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7조 5천억원으로 <u>하고</u> 대구광역시 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전액 출자한다.	제4조(자본금) ① ----- ----- <u>하고</u> ,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정관)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	제5조(정관) ①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임·직원</u> 에 관한 사항	5. <u>임직원</u> -----
6. ~ 13. (생략)	6. ~ 1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임원) ① 공사의 임원은 <u>사장</u> 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, 그	제7조(임원) ① ----- <u>대구교통 공사 사장</u> (이하 “사장”이라 한다)

현행	개정안
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	-----.
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<u>구분하고</u>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. 다만,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된다.	② ----- <u>구분하고</u> , ----- -----. -----.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⑤ 감사는 비상임으로 <u>하</u> 며 시장이 임면한다. 다만,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7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	⑤ ----- <u>하</u> 며, ----- -----. ----- ----- --.
제7조의2(임원추천위원회) ① (생략)	제7조의2(임원추천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6조의3에 의한다.	② -----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(이하 “ <u>시행령</u> ”이라 한다) 제56조의3에 <u>따른다</u> 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(임원의 임기 및 직무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<u>연임될</u> 수 있다.	제8조(임원의 임기 및 직무) ① --- ----- <u>연임할</u> -----.
② 제1항에 <u>의한</u> 사장의 연임 기준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른다.	② ----- <u>따른</u> ----- -- 「지방공기업법」 (이하 “ <u>법</u> ”이라 한다) 제58조제4항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. 3. (생략) 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<u>아니한</u> 사람으로 한다. 5. (생략) ② ③ (생략) 제11조(이사회) ① ② (생략)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<u>선임하며</u>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. ④ ⑤ (생략)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,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<u>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</u>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 ⑦ (생략) 제14조(겸직제한) ① (생략) ② 제1항에서 “영리를 목적으로	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----- ----- -----. <삭제> 2. 3. (현행과 같음) 4. <u>법 제58조제4항</u> ----- ----- ----- <u>않은</u> ----- --. 5. (현행과 같음) ② ③ (현행과 같음) 제11조(이사회) ①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선임</u> <u>하며,</u> ----- -----. ④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 <u>에서 이사회 활동</u>----- -----. ⑦ (현행과 같음) 제14조(겸직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

현행	개정안
하는 업무”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7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. 제15조(비밀누설의 금지등) 공사의 임·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제18조(운임의 결정) ①·② (생략) ③공사는 운임을 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징수방법,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 제20조(예산과 결산) ①·② (생략) ③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④ 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행령 제57조</u> <u>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/u> <u>하는</u> -----. 제15조(비밀누설의 금지등) ----- <u>임직원</u>----- <u>사람은</u> ----- -----. 제18조(운임의 결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<u>받아</u> ----- -----. 제20조(예산과 결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</u> ----- -----. ④ ---- <u>결산완료 후</u> ----- ---- <u>법에</u> ----- ----- ----- <u>받아야</u> -----.

현행	개정안
⑤ (생략) 제24조(사채의 발행)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<u>얻어</u> 사채(국내외)를 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<u>얻어야</u> 한다. ② (생략) 제25조(차관)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<u>얻어</u> 외국 차관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<u>얻어야</u> 한다. ② (생략) 제26조(차입)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<u>얻어</u>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 ② (생략) 제27조(감독) ① (생략)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<u>얻어야</u> 한다. 1. ~ 5. (생략) 제29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<u>기타</u>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,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가	⑤ (현행과 같음) 제24조(사채의 발행) ① ----- ----- <u>받아</u> -----. ----- ----- <u>받아야</u> 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25조(차관) ① ----- ----- <u>받아</u> ----- -----. ----- ----- <u>받아야</u> 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26조(차입) ① ----- -- <u>받아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27조(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받아야</u> 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제29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---- ----- <u>그</u> <u>밖의</u>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부담한다. 제33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<u>관하여 필요한</u>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-----. 제33조(규칙)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--.

관 계 법 령

[지방공기업법]

제49조(설립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행정안전부장관과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,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,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·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(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)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(任免)한다. 다만,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임원추천위원회”라 한다)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6. 4.>

1.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
2.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
3.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2. 15.>

1.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2.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

⑥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개정 2015. 12. 15.>

⑦ 이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.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2. 15.>

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15.> [전문개정 2011. 8. 4.]

제60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5. 12. 15.>

1. 삭제 <2019. 12. 3.>
2. 미성년자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4.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삭제 <2015. 12. 15.>

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 [전문개정 2011. 8. 4.]

[지방공기업법 시행령]

제56조의3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 다만,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09. 9. 21., 2013. 12. 4., 2016. 3. 30.>

1.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
2.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
3.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

②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 또는 임원후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임원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 <신설 2005. 3. 31.,

2019. 7. 9.>

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 <개정 2006. 6. 12.>

1. 경영전문가

2. 경제관련단체의 임원

3.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
4. 공인회계사

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④ 공사의 임·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의회의원을 포함한다)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3. 12. 4.>

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⑦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1., 2013. 12. 4.>

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 <개정 2009. 9. 21.>

⑨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·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7. 31.>

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 <신설 2009. 9. 21., 2012. 7. 31.> [본조신설 2002. 6. 19.] [제목개정 2009. 9. 21.] [제56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56조의3은 제56조의4로 이동 <2007. 3. 9.>]

제57조의2(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) 법 제61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

1.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, 공업,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

2.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, 공업,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(私企業體)의 이사, 감사,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, 지배인, 받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

3. 공사의 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하여 하는 투자

4.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

